

##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!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

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, 국세청이 꼼꼼히 짚어드립니다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·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,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·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### ① 부양가족,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? NO!

- ✓ '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·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, 보험료·교육비·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'25년 중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백만 원 발생한 배우자 ⇨ 기본공제 불가능  
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⇨ 1명만 공제 가능

### ②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

- ✓ '25.12.31.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,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 ✓ 또한,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⇨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

### ③ 내 집 마련 성공! 주택자금(주택담보·전세자금대출) 공제도 실수 없이!

- ✓ 주택임차자금 차입금(전세자금대출) 원리금 상환액은 '25.12.31.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- 또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액은 '25.12.31.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 가능

'25.11.30. 1주택을 취득하여 '25.12.31.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
⇨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불가,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

- ✓ 한편, 기준시가가 6억 원\*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,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\* '24.1.1.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'25.5.1. 기준시가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⇨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

### ④ 나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,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

- ✓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,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\*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

\*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 시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

- 다만,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'25.6월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'25.7월에 실손보험금 7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  
⇨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

□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습니다.

○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,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(국번없이 126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\* [경로] 국세청 누리집 (www.nts.go.kr) ⇨ 국세신고안내 ⇨ 개인·법인신고안내 ⇨ **연말정산**
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원천세과	책임자	과 장	김태수 (044-204-3341)
		담당자	사무관	한민희 (044-204-3347)



**기본공제 (소득세법 §50)**

- (대상) 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,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
- (나이 요건)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은 60세 이상,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은 20세 이하,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
  - \*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- (소득 요건) 연 소득금액\*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- \* 근로, 이자, 배당, 사업, 기타, 연금, 퇴직, 양도소득을 포함하며,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,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
- (공제금액)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
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'26.1.15.(목)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국세청에서 확보한 '25.1~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 '25.10월까지 신고한 사업·기타·퇴직·양도(주식 제외)소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므로 부양가족의 연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**월세액 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§95의2)**

- (대상)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무주택 세대주\*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) 이하인 근로자
  - \*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
- (임차주택)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으로서 국민주택규모(85㎡ 또는 100㎡)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
- (공제대상 금액)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 원 한도
- (공제율)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)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%를 세액공제,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5%를 세액공제  
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1천만 원×17% (15%) = 170만 원 (150만 원)

♣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(예 : 반전세),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

###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(소득세법 §52 ⑤)

- (대상)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\*인 근로자  
\*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
- (차입금) 근로자 본인 명의(공동명의 포함)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('24.1.1.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) 주택(오피스텔 제외)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
- (공제대상 금액)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 원 ~ 2천만 원 한도

### 주택임차자금차입금(전세자금대출)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(소득세법 §52 ④)

- (대상)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무주택 세대주\*인 근로자  
\*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
- (차입금)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
- (공제대상 금액) 원리금 상환액의 40%에 대해 연 400만원\*까지 공제 가능  
\*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(연 최대 120만 원 공제)과 합계액

### 의료비 세액공제 (소득세법 §59의4)

- (대상) 기본공제 대상자(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)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
\* 본인, 65세 이상·6세 이하자,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, 장애인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금액 한도가 없으며,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700만 원 한도
- (의료비) 국내 의료기관·약국에 지출한 의료비, 시력 보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 비용(1인당 50만원 한도),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·임차비용, 산후 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비용(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) 등  
\* 미용·성형수술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, 국외지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
- (공제율) 총급여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%  
미숙아·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%, 난임시술비는 30%

**1-1**

따로 살고 있는 **어머님이 '25.1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.**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**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·기부금 지출액** 등등을 **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?**

- '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-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**보장성 보험료**, 어머니가 기부한 **기부금**과 어머니 명의의 **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**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**공제\*받을 수 없습니다.**  
 \*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

**1-2**

**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**입니다.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, **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**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맞벌이 부부가 '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**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, 부부 중 1명은 '26.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**하여 **소득세 확정신고**를 이행하고 **추가납부세액**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**과소납부한 세액의 10%와 납부지연 가산세(1일 0.022%)**도 부담하여야 하므로,
-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**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중복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함께 제외해야 하는 공제**

-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기본공제                | 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|
| ② 장애인 추가공제            | ⑥ 의료비 세액공제     |
|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| ⑦ 교육비 세액공제     |
| ④ 자녀세액공제 (출산·입양공제 포함) | ⑧ 기부금 세액공제     |

\*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와 관련한 ②~⑧ 공제 적용 가능

**1-3** '25.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'25.12.31.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.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-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,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'25.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**2-1**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
-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주택소유자	차입자(대출명의자)	공제여부
근로자	근로자	○
근로자	배우자	X
배우자	근로자	X
근로자와 배우자	근로자	○
근로자와 배우자	근로자와 배우자	△*

\*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,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

'24.1.1. 이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을 받은 세대주\*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\*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·주택마련저축 공제·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

**2-2**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.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.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?

-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다만,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**3**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.  
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,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---

-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.
  -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- 다만,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✓ [경로] 홈택스(PC)·손택스(모바일) → '주택 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' 검색

---

**4-1** '25.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. '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요?

---

- '25.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'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'26년 1월 연말정산 시 '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,
- '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.

---

**4-2**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,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.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?

---

-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(나이·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)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.
-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,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